

인권센터 규정

(제정 2018. 6. 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학교법인 신동아학원 정관과 본교 학칙의 적용을 받는 교원(비전임 교원, 연구원, 조교 포함), 직원(임시직 포함), 학생(휴학생, 교환학생 포함)이 피해자 혹은 가해자(2차 가해 포함)로서 관련된 경우에 적용되며, 외부인이 피신고인, 가해자 또는 피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폭언·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성희롱”이란 성범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성적 굴욕감,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를 포함한다.
 - 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 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 나. 가목의 행위에 대한 불응이나 성차를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연구,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 다. 성차에 기반을 두어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 라.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동조하는 사람이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3. “성폭력”이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인권침해”란 성희롱·성폭력을 제외한 인권침해 또는 권익침해를 가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5. “피해자”란 인권침해, 성희롱, 성폭력을 당한 사람을 말한다.
6. “가해자”란 인권침해, 성희롱, 성폭력을 가한 사람을 말한다.
7. “신고인”이란 인권침해, 성희롱, 성폭력을 센터에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8. “피신고인”이란 신고인에 의하여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말한다.
9. “당사자”란 피해자, 가해자, 신고인과 피신고인을 말한다.

제4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
2. 인권침해, 성희롱, 성폭력 사건의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
3. 인권침해, 성희롱, 성폭력 사건의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4. 인권침해, 성희롱, 성폭력 피해 신고의 접수
5. 인권침해, 성희롱, 성폭력 피해 사건의 조사

6. 인권침해, 성희롱, 성폭력과 관련된 민원의 처리, 상담, 중재
7. 그 밖에 인권침해, 성희롱, 성폭력에 관련된 사항

제2장 조직

제5조(센터장) 센터장은 학생취업처장으로 하며,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상담 및 행정인력) ① 인권침해, 성희롱, 성폭력에 관한 상담, 조사, 연구, 교육활동 등 전문적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박사급 전문상담원을 둔다.

- ② 상담, 조사, 연구 및 교육업무의 지원, 그 밖의 행정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직원 또는 조교를 둘 수 있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7조(설치) 센터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권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3분의 1이상의 여성위원이 포함되어야 하며 총장이 위촉한다.

- ②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

- ③ 교무처장, 총무처장, 카운슬링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한다.

-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고 심의한다.

1. 센터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센터의 업무 처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센터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보고) 센터장은 센터에서 심의한 결과 등에 관한 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조사위원회

제12조(설치) 조사 의뢰가 있거나 필요성이 있을 때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며 조사가 종결되면 해산한다.

제13조(구성) ① 조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3분의 1이상의 여성위원이 포함되어야 하며 총장이 위촉한다.

- ② 위원은 센터장이 추천하며 피해자가 교원일 경우 교수 2명, 피해자가 직원일 경우 직원 2명, 피해자가 학생일 경우 학생 2명을 위원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 ③ 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제14조(기능) 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고 심의한다.

1. 인권침해, 성희롱, 성폭력 사건의 조사

2. 인권침해, 성희롱, 성폭력 사건의 중재
3. 그 밖에 인권침해, 성희롱, 성폭력 사건과 관련된 사항

제15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기피 신청) 위원장은 피해자가 특정 위원에 대하여 기피 및 제척 신청을 할 경우 이를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위원을 교체하여야 한다.

제17조(신고 및 신고 기구) ①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의 대리인이나, 사건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도 신고할 수 있다.

② 신고인은 서면, 전화, 통신, 직접방문 등 가능한 방법으로 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③ 교수회, 직원회, 각급 학생회, 기타 학내 단체 등에 접수된 사건도 신고된 것으로 간주하되, 이 경우 최종적으로 신고사항 일체를 센터로 이관하여야 한다.

제18조(신고의 각하)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신고를 각하한다.

1.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신고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
2. 그 밖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명백히 부적절한 경우

제19조(조사 및 처리) ① 조사가 개시되면 조사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사건의 조사와 처리 등 필요한 내용을 당사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위원장은 신고의 처리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징계 요청) 센터장은 조사결과가 학칙 등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할 경우 총장에게 징계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21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 유지) ① 사건발생 시 피해자 치료지원, 가해자에 대한 인사조치 등을 통해 제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 학습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신고인 또는 조사에 협력하는 사람에 대하여 신고 또는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인권침해 등의 사건을 직무상 알게 된 사람은 사건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관하여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처리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사건 처리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가해자, 피해자 및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3조(세부 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4조(동조자에 대한 처벌) 인권침해, 성희롱·성폭력 행위에 동조하는 자에 의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등의 상당한 피해를 받았음이 명백할 때에는 그 동조자에게도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25조(처리기간)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사건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고한 사건으로 하며, 신고 후 6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인권센터 규정 5-2-32-4

이 규정은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